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**

2019. 7. 24.
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7.1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19.7.16.
- 다. 상정일자: 제2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9.7.24.)  
    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】

### 가. 제안이유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 및 제29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1)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사업(안 제3조, 제4조)

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,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, 근로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,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,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,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
## 2)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격(안 제5조)

우리 구 거주자와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

## 3) 이용제한(안 제6조)

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, 반입 제한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등

## 4) 관리·운영의 위탁(안 제7조)

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,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규정 준용

## 5) 수탁운영자의 의무(안 제8조)

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,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,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목적 외로 사용금지 등

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조회록)

### ○ 본 조례안은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제29조에 근거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

○ 근로복지시설 운영은 「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 '시장은 자치구에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'라는 규정에 따라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,

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상담, 교육 등 노동권익보호 사업과 복지,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센터 위탁 운영 시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운영되는 바,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약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
- 아울러, 공간사용에 따른 환경변화가 예상되므로 시설조성 시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 타: 없 음

---

※ 서울시 자치구 설치 현황

- 기 설치구(12개구): 성동, 서대문, 구로, 노원, 성북, 강서, 관악, 광진, 양천, 강동, 중구, 중랑
- 2019 신규 설치구(4개구): 마포, 은평, 도봉, 영등포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19-88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: 2019. 7.  
발 의 자: 이홍민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초기 시행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제7조제3항 중 “3년 이내로 한다”를 “1년 이내로 한다”로 수정하고, “한 차례에 한하여”를 삭제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본문 중 “3년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”을 “위탁기간”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· 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<u>3년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<u>한 차례에 한하여</u>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1년</u> -----. ----- ----- <u>위탁기간</u>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